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1. 19 선고 2020가단168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조합

피 고 B

판결 선고 2021. 1. 19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5. 6.자 체결된 증여계약을 2,176,6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,176,6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편병호

별지